

I.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 사건 관련

① 이재용 외 삼성그룹 관계자 4명

박근혜 정부의 죄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2. 28.

사건번호 특검 2017형 제5호, 제15호, 제1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 제19020호, 제19023호, 제19025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검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이재용

주 거

등록기준지

죄명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외국환
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
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17. 2. 17. 구속(2017. 2. 16. 구인)

변호인

2. 피고인 박상진

직업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3. 피고인 죄지성

직업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4. 피고인 장충기

직업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5. 피고인 황성수

직업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를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1. 피고인들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이재용은 1991년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0.60%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17.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를 통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2017. 1. 기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삼성그룹의 소위 '대관 업무' 창구 역할을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간의 사업 및 투자 업무를 조정하는 미래 전략실(2012. 12.경 '구조조정본부'에서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각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박상진은 1977년경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그룹을 대표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의에 참석하여 삼성그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최지성은 1977년경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2012. 6.경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를 받아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장충기는 1978년경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2012. 12.경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최지성의 업무를 보좌하고 미래전략실의 소위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성수는 1988년경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제일기획 주식회사(이하 '제일기획') 스포츠 전략본부장(전무) 겸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지휘권, 인사권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사실상 그 권한의 행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및 국정감사에서의 기업인 증인선정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2016. 12. 9. 국회에서 국민

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등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죄 등을 범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최서원(개명 전 성명 '최순실')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1976년 경 '구국봉사단',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으로 각 명칭 변경, 이하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現 대통령)의 창립자인 故 A○○의 딸로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B○○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 재단')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 포츠 재단') 설립·모금,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주식회사 포스코,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등을 범한 사실로 201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최서원은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1986년경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왔으며, 대통령이 1998. 4.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면서 최서원의 남편 C○○가 비서로 활동하며 대통령을 보좌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최서원이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2013. 1.경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6. 10.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D○○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을 통하여 국무회의 자료, 정부 주요 인사안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들을 건네받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통령과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시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 駐 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 선정 및 대형 민간건

설사 대표이사 임명, 민간 은행의 임직원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 체육 관련 이권사업, 정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최서원은 대통령이 1990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42-6에 있는 주택(이하 '삼성동 사저')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 EOO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1998년경부터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해 주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관저 및 소위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주었으며, 1998년경부터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2013년경부터 약 4년간은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용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 의상실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2013년경부터 대통령에게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하여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뇌물공여

가. 뇌물공여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1) 뇌물공여 시점을 전후로 한 피고인 이재용의 현안

(가) 개요 :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추진

피고인 이재용은 1996년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FOO 회장으로부터 중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FOO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³⁾을 받아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자신이 지분을 보유

3) FOO 회장과 GOO 부회장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협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협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FOO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GOO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FOO 회장은 2009. 12. 29.에 GOO 부회장은 2010. 8. 15.에 각각 특별사면 되었음

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 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4. 5.경 FOO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이재용은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親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에는 승계작업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이재용은 FOO 회장 세대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의 뒤를 이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2015. 5.경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집단에게 소위 ‘맞춤형’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왔다.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구체적인 승계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4. 7. 16.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2012. 9. 26. 새누리당 H○○ 의원 발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인 면담 시 삼성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하게 하는 등 정부 측을 상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을 통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희망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을 2013. 5. 경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2014. 2. 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각각 포함시켜 추진해 왔고, 2016. 1. 경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보고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그룹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피고인 이재용은 2014. 5. ~ 6. 경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 사회적 논란 끝에 상당수의 지분을 취득한 삼성SDS와 제일모직(2014. 7. 4. ‘삼성에버랜드’에서 상호 변경)에 대하여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거쳐 삼성SDS는 2014. 11. 14., 제일모직은 2014. 12. 18. 각각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소액주주들로부터 피고인 이재용이 주주들과 시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비상장 지분을 활용하여 막대한 상장 차익까지 얻

은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5. 2.경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국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1조 원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GOO 법(法)'이 발의된 바 있다.

(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무산

피고인 이재용은 2014. 9. 1.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을 발표한 후 2014. 10. 27.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으나, 위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위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100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위 합병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4. 11. 19. 위 합병이 무산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계열사 간 합병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 삼성테크원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한화그룹 매각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구체적인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2014. 11. 26. 삼성그룹의 비핵심 계열사인 방위사업체(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와 석유화학사업체(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4개 회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5.경 위 4개 회사의 매각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은 위한 승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매각 대상 계열사 노조의 반발과 언론의 문제제기 등 비판 여

론이 있었고, 삼성토탈과 한화케미칼의 합병을 통한 일부 화학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피고인 이재용을 포함한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1.41%만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주식 19.34%를 보유하고 있었는바(2015. 5. 기준),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합병 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구체적인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을 다수 보유한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발표하였는데, 2015. 5. 27. 삼성물산의 주주인 외국계 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은 위 합병의 합병비율['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였고, 2015. 6. 24. 위 합병과 유사한 사안인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반 의결권 행사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의 동향을 파악하고, 삼성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JOO은 2015. 7. 4.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합병 찬반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장충기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KOO, 삼성물산 대표이사 LOO은 삼성물산 주

주인 일성신약 부회장 M○○을 5회 만나 “합병에 찬성해 주면 별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미래전략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돋기 위하여 2015. 6. 말경, 정치권이나 행정부처가 개입하여 ‘국민들의 노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에 반하는 방식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수석과 N○○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6.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이므로 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이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으며,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 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도 위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으로 계산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⁴⁾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찬반 결정을 위해서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 처리 전례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위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

4) 이러한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임

보건복지부 장관 〇〇〇⁵⁾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2015. 7. 초순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P〇〇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묵살하고 I〇〇 본부장 등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고 소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이 대부분 부서 의견대로 의결되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2015. 7. 10. I〇〇 본부장은 〇〇〇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될 손해(최소 1,388억 원)를 상쇄할 수 있는 2조 원 이상의 시너지가 합병 후 법인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회의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7.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불법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됨에 따라 최소 8,549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위 합병에 대하여는 소액 주주,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⁶⁾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합병 등기 후 6개월 내에 위 합병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상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하여 삼성그룹 계열사가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

5) 〇〇〇 前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2017. 1. 16. 구속 기소되었음

6) 2017. 1. 31. 삼성물산 주가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손과 평가손을 합산한 총 손실액은 8,638억 원임

식 수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피고인 이재용은 2015. 5. 하순 ~ 7. 초순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박상진은 2015. 7. 10.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B○○ 수석에게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이하 ‘원샷법’, 2015. 7. 9. 새누리당 Q○○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의 대량보유 시 금융위원회 등 보고의무 강화(영국, 독일과 같이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 주식 기준을 5%→3%로 강화, ‘보유 목적’ 관련 금융위원회 실무 매뉴얼 구체화 등) 및 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B○○ 수석은 피고인 박상진의 요구에 대하여 “5% 지분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는 검토를 할 예정이고, ‘원샷법’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그 외에도 피고인 장충기를 통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언론 및 공청회 등에서 엘리엇 사안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을 돋기 위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 및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게 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25.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개입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2015. 7. 27. 대통령은 BOO 수석에게 엘리엇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 및 경영권 방어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6. 2. 4. 새누리당의 주도 하에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2016. 2. 11. BOO 수석에게 지시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하여금 엘리엇의 대리인 ROO 前 주한 미국대사 면담 시 엘리엇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엘리엇의 5% 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6. 5. 경 위와 같은 5% 보고의무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발표 이후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그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된 삼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 중이던 삼성물산에 대해 피고인 이재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총량이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었고,⁷⁾ 이에 피고인 이재용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 전인 2015. 6.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위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7. 1. 엘리엇 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

7) 2015. 12. 23. 최종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6. 2. 25.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130만 5,000주(약 2,000억 원 규모)는 피고인 자신이 매입하고, 200만 주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하였음

되어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피고인 이재용의 입장에서 승계작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상진은 2015. 7. 10. 위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B ○○ 수석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를 삼성 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24.부터 2015. 9. 29.까지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6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부서인 경쟁정책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삼성 측의 입장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3개월 이상의 검토 끝에 2015. 10.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하여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를 2016. 3. 1.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S○○,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T○○, 공정거래위원장 U○○이 순차 결재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10. 15. V○○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측 담당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0. 15.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이를 삼성 측에 문서로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11. 5. V○○ 등 삼성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만 주 처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2015. 11. 중순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블록딜(Block Deal) 방식으로 매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대로 이행하겠으니, 공식 통보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2015. 11. 17. K○○이 T○○ 부위원장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일식집에서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1,000만 주는 너무 많다. 삼성 전기 부분(500만 주)은 수용하겠는데, 삼성SDI 부분(500만 주)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무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W○○은 T○○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삼성 측에서 종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후 T○○ 부위원장은 K○○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검토 상황, 일정, 검토의 주안점 등 대상기업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K○○과 W○○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8. 담당 부서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X○○ 사무관을 불러 처분주식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11. 20.과 11. 27. 경쟁정책국장 Y○○, 기업집단과장 Z○○, X○○ 사무관이 11. 30. 공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공식 통보 연기는 불가능하니 즉시 삼성 측에 기존에 결정된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T○○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자, T○○ 부위원장은 “삼성전기 부분(500만 주)은 적용제외로 보아야 하고, 1,000만 주로 삼성에 공식 통보는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위원장이냐”라고 말하며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설명자료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이와 같이 이미 최종결정권자인 공정거래 위원장까지 결재하여 삼성 측에 통보까지 끝낸 유권해석을 이해관계자인 삼성 측의 청탁과 청와대의 요구로 번복하는 전례 없는 무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실무자들이 정당하게 행동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Y○○ 국장은 11. 27. U○○ 위원장을 찾아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Z○○ 과장은 그 무렵 X○○ 사무관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일자로 정리해 두

라”고 지시하였으며, XOO 사무관은 10. 14.부터 12. 23.까지의 위 사안 관련 결재 상황, TOO 부위원장, UOO 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 WOO 비서관, GOO 행정관 등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 VOO, KOO, LOO 전무 등 삼성 측 관계자들의 말과 행동 등을 ‘일지정리’라는 제목으로 일자별, 주요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 이재용은 2015. 12. 19. 피고인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관한 삼성 측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찰시켜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0. 위와 같은 TOO 부위원장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기존에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바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 주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여 삼성 측에 통보하여 시행하겠다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GOO 행정관은 XOO 사무관에게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요구하였고, 2015. 12. 21. WOO 비서관은 BOO 수석으로부터 500만 주만 처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TOO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방안이 없느냐”고 삼성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같은 날 TOO 부위원장은 그러한 WOO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XOO 사무관 등을 불러 “900만 주를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였고, 2015. 12. 22. 삼성 측 요구대로 500만 주만 처분하는 안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다시 XOO 사무관에게 지시하여 당초 처분대상 주식규모가 ‘900만 주’ 단일 결론으로 되어 있던 보고서를 변경하여 처분대상 주식 규모를 ‘1안(900만 주), 2안(500만 주)’로 하여 결론을 정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 보고를 받은 UOO 위원장은 1안(900만 주)으로 가면 정부(청와대)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되고, 2안(500만 주)으로 가면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WOO

비서관은 B○○ 수석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빨리 500만 주로 결정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B○○ 수석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 T○○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B○○ 경제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이 2안(500만 주)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역정을 낸다. 상황이 좋지 않다. 형님이 위원장님한테 2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라고 청와대의 뜻을 따르도록 압박하였다. 그에 따라 T○○ 부위원장은 W○○ 비서관의 말을 U○○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2안으로 결정하라고 설득하였고, U○○ 위원장은 2015. 12. 23. T○○ 부위원장을 통해 C○○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은 후 결국 2안(삼성SDI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결재하여 삼성 측에 공식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하였다.

(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을 투자부문(지주)과 사업부문(생명)으로 인적 분할하고 삼성생명의 자산 약 11조 원(금융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 삼성생명 자사주 약 2조 1,000억 원, 현금 약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한 후 피고인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금융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개인자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 지분 약 45.78%를 보유하여 금융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마련한 후, 2016. 1. 중순 경 기획재정부 출신인 미래전략실 전무 E○○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은밀하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환계획 승인이 필요한 삼성 측이 승인권자인 금융위원회에 이와 같이 사전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환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2016. 1. 28. 언론에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자, 삼성 측과

협의를 하여 삼성 측으로부터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고, 삼성 측은 이러한 전환계획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BOO 수석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전달하였다.

그 후 2016. 2. 14.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을 통하여 삼성 측이 제출한 전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을 삼성 측 희망대로 5년 내 단계적으로 매각을 허용할 경우 유배당계약자 배당이 전혀 없어 삼성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② 삼성생명이 보유한 현금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여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현금을 계열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리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은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가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 청와대로 찾아가 BOO 수석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아래 나. (1).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 15.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대통령에게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단독 면담 직후 BOO 수석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 측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였음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여, 2016. 3. 13.에는 □○○ 부위원장이 다시, 일주일 뒤인 3. 20.에는 금융위원장 △○○이 각각 삼성 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참하고 청와대로 찾아가 BOO

수석에게 삼성 측의 위 전환계획을 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수용할 수 없음을 삼성 측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이재용은 〇〇〇, 삼성생명 부사장 〇〇〇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추진 의지가 강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삼성에서는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3. 29. 삼성 측의 전환계획 추진 사실이 발표될 경우 큰 비판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6. 4. 13.로 예정된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도록 〇〇〇에게 권고하였으며, 삼성 측은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피고인 이재용은 ‘바이오 사업’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선정하여 피고인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적자 기업은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상 요건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5. 11. 5.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년 영업이익 3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였고, 2015. 12. 21.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피고인 이재용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바이오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2016. 2. 15.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2015. 12.

경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환경부의 등록을 면제해 주어 2016. 2. 경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이 상업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로 바이오사업 공장 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사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 2016. 2. 15. 및 2. 2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재용의 요청을 B○○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삼성 등으로부터 규제 리스트를 받아 환경부가 검토하게 하는 등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16. 3. 2. 한국거래소는 위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장 심사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2016. 3. 3. 국가기술과학심의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6. 5. 7. ㅈ○○ 환경부장관이 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방문하였으며, 2016. 11.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경된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⁸⁾ 현재 바이오특별위원회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환경부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화평법 적용 제외 등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카)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2015. 5. 경부터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삼성그룹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은 2015. 6. 23.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피고인 장충기를 통해 감사원 임원 출신 고문 등을 동원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

8) 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개정 후 적자 기업이 상장 심사에 통과한 수혜 사례는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함

였다. 그 후 대통령은 2015. 7. 25. 피고인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시 피고인 이재용에게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였고, 2015. 7. 28.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2015. 9. 10.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2016. 1. 14.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걸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인 이재용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 등을 겪은 피고인 이재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정부 정책당국의 협조, 필요한 법령의 입법, 불리한 입법 저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관여권, 대통령의 연설,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자 등 민간 시장 참여자들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입장,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 및 행정부 발의 입법이나 여당을 통한 관련 법률 입법 진행 경과 등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 등을 통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성공 가능성, 일정 등을 예측하고 투자결정 등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에 큰 변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작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미래전략실 간부 등을 통해 정책·규제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경제 관련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며, 대통령도 2014. 6.경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FOO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이재용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로부터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챙겨왔다.

결국,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위와 같은 계획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민간 분야에 영향을 끼쳐 주식시장 등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계획에 우호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했고, 반대로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이재용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 FOO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1) 피고인 이재용, 대통령, 최서원 간 뇌물수수 협의 과정

(가) 2014. 9. 1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3. 4.경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딸 FOO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하여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3. 7.경 대통령에게 문체부 담당자로 하여금

ㅊ○○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ㅋ○○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를 만나 대한승마협회의 비위를 조사하고 최서원이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여 대통령이 ㅌ○○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나, 문체부 담당자 ㅍ○○ 등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ㅋ○○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 내용에 불만을 갖게 된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게 ㅍ○○ 등에 대한 공개적 좌천 인사를 지시하였으며, 2013. 10.경 최서원의 추천을 받은 ㅎ○○을 대한승마협회를 감독하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과 최서원은 ㅊ○○가 승마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승마협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14. 3.경 ㅊ○○가 승마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2014. 4.경 “비선실세 최서원, ㅊ○○의 딸 ㅊ○○가 승마 국가대표에 부당하게 선발되었다”는 소위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⁹⁾ 2014. 9. 초순경 최서원은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화그룹이 ㅊ○○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ㅊ○○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에게 F○○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ㅊ○○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9) 당시 ㅊ○○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ㅊ○○와 최서원의 딸이라는 사실은 대한승마협회 등 승마 관련 자들이나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ㅊ○○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위 가.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및 ㅊ○○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5. 7. 2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¹⁰⁾

대통령은 2015. 1.경부터 a○○ 문체부 장관, ㅎ○○ 차관에게 ㅊ○○에 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특히 ㅎ○○ 차관에게는 D○○ 비서관을 통해 삼성 측에 연락을 하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5. 5. 8. ㅊ○○가 예상치 못한 임신 후 아들을 출산하자 최서원은 2015. 6. 10. ㅋ○○로 하여금 ㅊ○○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말 구입 등의 비용으로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피고인 박상진에게 보고하게 한 후, 2015. 6. 30. ㅊ○○를 독일로 출국시켰다.

2015. 7.경 최서원은 삼성그룹 소속 대한승마협회 임원 b○○, c○○이 ㅊ○○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b○○, c○○을 d○○ 제일기획 사장의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고가의 말 구입 및 독일 전지훈련 비용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ㅊ○○를 지원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

10) 2015. 7. 25.에는 ㅊ○○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이재용에게 ㅊ○○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의 임기 내에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하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b○○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c○○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d○○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현안을 대통령과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ㅊ○○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사례를 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ㅊ○○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2016. 2. 1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¹¹⁾

대통령은 2016. 1. 12. BOO 수석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이재용 및 피고인 박상진으로 하여금 층OO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층OO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2016. 2. 경 최서원으로부터 피고인 이재용이 그동안 층OO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주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 2015. 12. 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계열사 간 주식 처분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최소화하는 등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준 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층OO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오후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층OO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층OO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위 가. (1). (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전 결정을 변복하고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해 준 점에 대해 사례를 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향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엘리엇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

11) 2016. 2. 15.에는 층OO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협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협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련 환경규제 완화 및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삼성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뇌물공여 이행 과정

(가) 2014. 9. ~ 2015. 7. 경 뇌물공여 이행 과정

피고인 이재용은 2014. 9. 15. 위와 같은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에게 지시하여 2014. 11. 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b○○ 삼성전자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 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피고인 박상진을 내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장충기는 ‘승마인의 밤’ 행사에 ㅊ○○가 참석하지 않게 하여 소위 ‘비선실세’ 논란에 따른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ㅊ○○를 특별히 관리하였다.¹²⁾

ㅊ○○가 2015. 5. 8. 아들을 출산한 후 본격적으로 승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박상진은 2015. 6. 10. 최서원의 지시를 받아 ㅋ○○, ㅎ○○찬이 작성한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ㅊ○○를 포함한 승마선수에게 ‘삼성그룹의 부담으로’ 말 구입비용 등 합계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한국승마중장기 로드맵’을 보고받은 후, 2015. 6. 24. 최서원의 측근인 ㅎ○○을 만나 ‘ㅊ○○가 최근 출산을 하여 삼성에서 승

12) 2014. 11. 말 ‘최서원의 남편 COO와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국정 중요 사안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검찰 수사까지 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e○○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최서원이 1위, C○○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고 벌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최서원이 소위 비선실세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었음

마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ㅊ○○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삼성에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위 나. (1).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뇌물수수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23. 피고인 장충기를 통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시 ㅊ○○에 대한 지원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이재용 주재로 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 최지성과 함께 피고인 박상진으로부터 ㅊ○○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그때까지 ㅊ○○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¹³⁾

(나) 2015. 7. ~ 2016. 10.경 뇌물공여 이행 과정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25. 위와 같은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박상진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피고인 박상진은 다음 날인 2015. 7. 26. b○○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마장시설, 'ㅊ○○'이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ㅋ○○에게 연락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¹⁴⁾ 2015. 7. 27.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박상진은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f○○와 함께 회의를 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b○○, c○○을 d○○의 직계 임직원인 피고인 황성수, f○○로 각각 교체하였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상진은 2015. 7. 29. 독일에서 ㅊ○○와 함께 지내던 ㅋ○○를 만나 최서원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하는 방식 등 최서원의

13) 피고인 박상진은 2015. 7. 23. 회의 직후에 h○○찬을 통해 ㅋ○○의 독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다음 날인 7. 24. b○○에게 ㅋ○○와 통화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b○○은 ㅋ○○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박상진과 함께 독일에 직접 가겠다고 말하였음

14) 2015. 7. 26. 당시에는 아직 '컨설팅회사'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5. 8. 26. 최서원이 준비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언론에서 코어스포츠에 대해 취재하자 2016. 2. 9. 'Widec Sports GmbH'(비덱스포츠)로 상호 변경}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 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 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 유로)을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2. 15.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 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송금하여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 유로)을 최서원에게 지급하였다.¹⁵⁾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ㅋ○○가 승마 훈련 및 승마대회 출전에 사용할 고가의 말 등을 사주기 위해 외형상 삼성전자가 말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ㅋ○○에게 말을 빌려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 유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¹⁶⁾ 2015. 11. 13. 위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 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2016. 2. 4.

15) SK그룹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2016. 2. 29. 펜싱 등 케이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 원을 위 비덱스포츠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

16) 당초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말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최서원이 ㅋ○○에게 "이재룡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 준다고 했나, 왜 말 여권에 소유주를 삼성이라고 적었냐?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박상진을 직접 질책하기 위해 독일로 소환하자 피고인 박상진은 ㅋ○○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서원에게 급히 사과하였고,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중개인인 h○○로 다시 바꾸고, 그 후 구입한 말들은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삼성'으로 하지 않고 매도인 측 소유로 남겨두었음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V : 150만 유로, 라우싱1233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을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를 통해 삼성전자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2. 15.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2016. 2. 19. 위 비타나V와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 유로)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41억 6,251만 원(314만 9,717 유로)을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독일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최서원 대신 마주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밀, 차량, 기타 부대 비용 등을 최서원에게 제공하였다.¹⁷⁾

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뇌물공여

(1) 피고인 이재용, 대통령, 최서원 간 뇌물수수 협의 과정

(가) 2015. 7. 2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5. 2. 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조카 iO O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hO O 차관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최서원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17) 위 뇌물공여 이행 과정에서, 2016. 1. 경부터 피고인 박상진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독일 현지, 인천공항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에서 한 달에 1~2회에 걸쳐 은밀하게 최서원과 직접 만나 tO O에 대한 지원 방안, 외부에 이러한 피고인 이재용의 최서원에 대한 불법적 지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도록 범행을 은폐하는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였음. 또한,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으로부터 최서원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6. 5.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 시 만찬장에서 피고인 박상진을 대통령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게 하는 전례 없이 과격적인 예우를 하였으며, 피고인 박상진에게 직접 약수를 청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얼마 후 최서원이 피고인 박상진에게 “약수는 잘 하셨나?”라고 확인하는 등 대통령의 위와 같은 피고인 박상진에 대한 과격적인 감사 표시 역시 최서원과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었음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D○O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i○O와 함께 만든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1).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위 나. (1).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 등을 밝히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d○O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라고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6. 2. 1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6. 2. 14.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i○O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1). (다).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최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뇌물공여 이행 과정

피고인 이재용은 위와 같은 2015. 7. 25.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d○○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고, 2015. 8. 9. B○○ 수석으로부터 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d○○은 2015. 8. 20. ㅎ○○ 차관을 만나고, 2015. 8. 21. 영재센터 전무이사 j○○을 만나 구체적인 영재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한 후 b○○을 통해 2015. 10. 2.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재용은 2016. 2. 15. 위와 같은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에게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면서 d○○, b○○을 통해 2016. 3. 3.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뇌물공여

(1) 피고인 이재용, 대통령, 최서원 간 뇌물수수 협의 과정

(가) 2015. 7. 2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5. 5.경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 하되 출연 기업들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1).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B○○ 수석, W○○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2015. 7. 하순경 '문화와 체육 분야의 두 개 재단법인의 초기출연금 규모는 각각 300억 원 수준으로 출범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진, 한화, 두산, CJ 등 대통령이 지정한 10개 그룹에서 하나의 재단법인에 30억 원씩 출연하여 설립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단 그룹간 출연규모 차등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며, 재단 설립 후 사업재원은 ① 출연금 이자수익, ② 정부 재정지원, ③ 대기업(법인) 및 기업 임원(개인)의 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B○○ 수석에게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여 향후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혼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

(나) 2016. 2. 15.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대통령은 2015. 7. 24. ~ 7. 25. 피고인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난 후 B○○ 수석에게 위와 같이 10개 그룹에서 출연하여 두 개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었으니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B○○ 수석은 2015. 7. 하순 ~ 8. 초순경 전경련 부회장 k○○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이후 재단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최서원은 2015. 10. 경 10○○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핑계 삼아 D○○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은 B○○ 수석에게 “재단 설립이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으며, B○○ 수석은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를 k○○에게 전달하면서 W○○ 비서관을 통하여 삼성그룹을 포함한 9개 그룹을 재단 출연 기업으로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그 무렵 최서원은 문화 관련 재단법인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고 위 재단 이사장 ‘m○○’, 사무총장 ‘n○○’, 이사 ‘o○○’ 등 재단법인 임직원을 내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은 B○○수석에게 재단 명칭 및 이사진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5. 10. 23. B○○ 수석은 W○○ 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경련 측에 전달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그대로 반영하게 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1). (다)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서원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주어 고맙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지

원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뇌물공여 이행 과정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25.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에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2015. 8. 중순경 전경련 전무 p○○를 통해 “B○○ 수석이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니 전경련에서 두 재단 각각 300억 원씩 모금을 해 달라고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말했던 사안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5. 10. 23. 재단 명칭이나 이사진 구성, 재단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달 27.까지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삼성그룹에서 105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5. 10. 24. 재단의 출연금 총액이 갑자기 500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삼성그룹의 출연금도 12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5. 10. 26.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기존 9:1에서 2:8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 등 삼성그룹이 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5. p○

○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5. 11. 20. 삼성전자로 하여금 60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로 하여금 25억 원,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15억 원, 2015. 11. 25.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25억 원 등 임의로 선정한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2015. 12. 중순경 미래전략실 전무 q○○를 통해 전경련 측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총 300억 원 중 79억 원을 삼성그룹에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2016. 1. 경 미르 재단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창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삼성그룹이 재단법인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 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2016. 2. 경 p○○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6. 2. 26.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30억 원,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10억 원, 에스원으로 하여금 10억 원, 삼성화재로 하여금 29억 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¹⁸⁾.

마. 소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제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실제 지급하고, 추가로 최서원에게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

18) 한편 2016. 1. 13.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후 2016. 1. 18. 피고인 박상진이 케이스포츠 재단 현판식에 참석하여 위 제2의 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r○○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2015. 8. 26.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석했던 r○○을 만나 케이스포츠 재단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삼성 측은 재단법인의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목으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제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20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최서원(승마)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합계
공여금액	77억 9,735만 원 (액속금액 213억 원)	16억 2,800만 원	125억 원	79억 원	298억 2,535만 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범죄사실

피고인 이재용은 위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위 제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ㅊ○○의 독일 승마 관련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최서원, 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금 유용이 용이한 일부 계열사의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재용은, 코어스포츠는 최서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고, 영재센터는 최서원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출연 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각 계열사의 업무 성격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고인 이재용이 장악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용은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박상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5. 8. 26.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 1.부터 2018. 12. 31.까지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후 2015. 9. 14.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의 10억 8,687만 원 상당(81만 520 유로)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의 합계 77억 9,735만 원(597만 9,686 유로)을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최서원이 구입한 말, 말 운송용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은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등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b〇〇을 통해 2015. 10. 2. 삼성전자 회사 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제일기획, 에스원 소유의 합계 220억 2,800만 원을 영재센터,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소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의 회계담당자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합계 77억 9,735만 원(597

만 9,686 유로)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의 각 회계담당자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 억 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해자 에스원의 자금 10억 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최서원(승마)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합계
횡령금액	77억 9,735만 원 (악속금액 213억 원)	16억 2,800만 원	125억 원	79억 원	298억 2,535만 원
		합계 220억 2,800만 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외화를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예금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상거래 등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별도의 처분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 ㅊ○○가 사용할 말과 돈을 최서원에게 주

기 위하여 위 제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횡령한 삼성전자 자금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독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은 사실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는 최서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승마단¹⁹⁾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관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없고, 실제로는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서원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박상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5. 8. 26.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 1.부터 2018. 12. 31.까지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5. 9. 14.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810,520 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제1번, 제3번~제5번 기재와 같이 2016. 7.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829,969 유로(한화 36억 3,484만 원 상당)를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 하나은행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5. 10. 2. 삼성전자 부장이자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인 g○○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ㅊ○○에게 줄 말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19) 당시 삼성전자 승마단은 존재하지 않았음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한 다음,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3,193,000 유로(한화 42억 5,946만 원 상당)를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22,969 유로(한화 78억 9,430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제2,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승계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서원에게 ㅊ○○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공여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최서원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최서원과 함께 2015. 8. 26.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간에 2015. 8.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거나 삼성전자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ㅊ○○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말을 소유하고 ㅊ○○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14. 삼성전자에서 810,520 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코

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아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79,686 유로(77억 9,735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위 제2, 3항과 같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²⁰⁾.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ㅊ○○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위 제2,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서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서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ㅊ○○가 아닌 삼성전자 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ㅊ○○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들과 최서원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6. 8. 22. 삼성전자와 말 중개업자인 h○○가 운영하는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Helgstrand Dressage A/S) 간에 “삼성전자가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269만 100 유로에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ㅊ○○로 하여금 위 말 3마리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16. 9. 23. 다시 언론에서 ‘비타나V’라는 말이

20) 최서원과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2016. 10. 19. 독일에서 만나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계약이 2016. 3. 31. 자로 해지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최서원은 독일 현지 자동차업종 회사를 새로 내세워 2016. 4. 1.부터는 마치 삼성이 아니라 그 독일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삼성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음

름을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지시에 따라 2016. 9. 28. 최서원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밀리에 만나 위 말들에 대한 언론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말들을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 소유의 새로운 말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여 최서원이 소유하고 말 값 차액만 최서원이 비덱스포츠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후, 2016. 9. 29. 최서원, 피고인 황성수, h○○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밀리에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최서원과 h○○는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였다.²¹⁾

또한, 실제로는 당초 삼성전자가 최서원에게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최서원 사이에 새로이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최서원이 비덱스포츠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최서원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의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황성수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2016. 11. 초순경 2016. 8. 22.자로 계약일을 소급하여 삼성전자와 h○○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GGA²²⁾(Grønborg Gulvservice A/S) 간에 "GGA가 삼성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

21) h○○는 '비타나V' 등도 판매한 중개상으로서, 최서원과 삼성 간의 관계와 '비타나V' 등 말들의 소유관계가 외부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최서원에게 교환해 주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삼성 측의 의사 확인도 필요했으므로, 9. 29.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최서원, 피고인 황성수, h○○ 3자 간에 직접 만나 합의를 하게 된 것임

22) 위 허위용역계약의 상대방인 GGA는 바닥재관리, 유지보수, 교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마크 현지 업체로 승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임에도, 헬그스트란트를 허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경우 말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삼성 측 요청에 따라 h○○가 지정한 GGA를 허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한 것임

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삼성전자가 GGA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9.자로 삼성전자와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 간에 “삼성전자가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삼성전자에서 h○○에게 지급하고, h○○는 그 돈으로 삼성전자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위 제2, 3항과 같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이재용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9. 15., 2015. 7. 25., 2016. 2. 15.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최서원의 딸 Ⓜ○○에 대한 독일 승마훈련 비용 지원, 영재센터 지원,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자금 지원을 요구 받고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최서원, 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에 후원금 등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s○○ 앞에서, ① t○○ 위원의 “그날(2015. 7. 25.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기부 좀 해 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u○○ 위원의 “지난

해(2015년) 8월 삼성전자는 독일의 비넥스포츠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37억 원을 송금했네요. 이때 최서원 씨를 아셨습니까?”라는 물음에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ㅊ○○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라는 물음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③ v○○ 위원의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최서원, 영재센터,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서원, ㅊ○○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3부.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1부.
3.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 2부.
4.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5. 변호인선임서 13부.
6. 석방지휘서 2부.
7. 피의자수용증명 1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일시	피해자	금액	범행방법
1	2015. 9. 14.	삼성전자	10억 8,687만 원 (81만 52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2	2015. 10. 14.	상동	2억 4,418만 원 (18만 6,887유로)	ㅊ○○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3	2015. 10. 21.	상동	7억 4,915만 원 (58만 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5. 11. 13.	상동	8,217만 원 (6만 5,830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5. 12. 1.	상동	8억 7,935만 원 (71만 6,049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5. 12. 14	상동	2억 5,890만 원 (20만 유로)	ㅊ○○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7	2016. 2. 4.	상동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라우싱1233(RAUSING1233)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8	2016. 2. 19.	상동	1억 5,929만 원 (11만 7,000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 라우싱 1233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9	2016. 3. 24.	상동	9억 4,340만 원 (72만 3,40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10	2016. 7. 26.	상동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77억 9,735만 원 (597만 9,686유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일시	피해자	횡령액	범행방법
1	2015. 10. 2.	삼성전자	5억 5,000만 원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
2	2015. 11. 20.	삼성전자	60억 원	미르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
3	2015. 11. 20.	삼성화재 해상보험	25억 원	상동
4	2015. 11. 20.	삼성물산	15억 원	상동
5	2015. 11. 25.	삼성생명	25억 원	상동
6	2016. 2. 26.	제일기획	10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
7	2016. 2. 26.	삼성생명	30억 원	상동
8	2016. 2. 26.	에스원	10억 원	상동
9	2016. 2. 26.	삼성화재 해상보험	29억 원	상동
10	2016. 3. 3.	삼성전자	10억 7,800만 원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
합계			220억 2,8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일시	국외도피금액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송금된 금액)	수취인	범행방법
1	2015. 9. 14	81만 520유로 (10억 8,687만 원)	KEB HANA BANK 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실제로는 독일에 사무소를 둔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서원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것임에도, 코어스포츠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화의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2	2015. 10. 2	319만 3,000유로 (42억 5,946만 원)	KEB HANA BANK (D) AG SAMSUNG ELECTRONICS CO. LTD.	독일 KEB하나은행에 삼성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마필과 차량을 구입하고 소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을 예치 사유로 하는 허위의 예금거래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한 후, 경상거래 등 '인정된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서원에게 마필, 차량 구입대금을 증여하는 것임에도 6회에 걸쳐 마주(馬主)인 호프 카셀만社,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社 등에게 예금 지급시 별도의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함
3	2015. 12. 1	71만 6,049유로 (8억 7,935만 원)	KEB HANA BANK 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실제로는 독일에 사무소를 둔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서원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것임에도, 코어스포츠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화의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4	2016. 3. 24	72만 3,400유로 (9억 4,340만 원)	KEB HANA BANK WIDEC SPORTS INTERNATIONAL GMBH	"
5	2016. 7. 26	58만 유로 (7억 2,522만 원)	"	"
합계		602만 2,969유로 (78억 9,4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1	2015. 9. 14.	10억 8,687만 원 (81만 52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2	2015. 10. 14.	2억 4,418만 원 (18만 6,887유로)	ㅊ○○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3	2015. 10. 21.	7억 4,915만 원 (58만 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5. 11. 13.	8,217만 원 (6만 5,830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5. 12. 1.	8억 7,935만 원 (71만 6,049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5. 12. 14	2억 5,890만 원 (20만 유로)	ㅊ○○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7	2016. 2. 4.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라우싱1233(RAUSING1233)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8	2016. 2. 19.	1억 5,929만 원 (11만 7,000유로)	ㅊ○○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9	2016. 3. 24.	9억 4,340만 원 (72만 3,40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10	2016. 7. 26.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77억 9,735만 원 (597만 9,686유로)	

②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쇠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 1. 16.

사건번호 특검 2016형제5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 박근혜정부의쇠순실등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문형표

직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前 보건복지부장관), 010-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16. 12. 30. 구속(2016. 12. 28 체포)

변호인 변호사

II.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8. 26.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고, 2015. 12. 31.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 제청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 국민연금공단 예산의 승인 등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약 2,100만 명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받아²³⁾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할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의 원칙 등 4대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위와 같은 4대 원칙 외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²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공

23)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로 납부받아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2016. 11. 기준으로 550조원 이상으로 세계 3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임

24)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

단의 전문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복지부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015. 5. 26. 삼성그룹 계열사들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는 두 회사를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하고, 합병비율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는 내용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의 주식 42.1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됨과 동시에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한편, 2015. 1. 2.부터 2015. 5. 22.까지 삼성물산 외 다른 주요 건설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는바, 삼성물산이 2015. 5. 13.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공사대금 약 2조 원 규모)를 수주하고도 공시하지 않다가 합병 발표 시점 이후인 2015. 7. 28.

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해손되어서는 안 된다.

공시하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사이에 삼성물산이 주관하던 공사 중 일부의 주관 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위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포함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²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리서치팀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은 합병계약 시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상 총자산가치, 향후 성장성, 보유 지분 가치 등을 평가하였을 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제일모직 상장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주가 상대 비율이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므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로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그만큼 많이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7.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합병의 성사 여부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이 되어, 국민

25)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등 주식대수가격 결정'도 위와 같은 이유로 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 내 회사이이고, ②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현황에 차등이 있어 합병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③ 삼성물산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종 건설업체들의 주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하락하였고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 의심되고, ④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발표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다가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였고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 및 직전에 있었던 SK 합병 건에 대한 반대 의결 절차와는 달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합병계약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므로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병계약 전날인 2015. 5. 22.이 아니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 12. 17.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연금공단이 반대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합병 발표 이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그 의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2015. 7. 3.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이므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이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으며, 그 무렵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이 자문을 의뢰한 H 회계법인, 삼성물산이 자문을 의뢰한 I 회계법인 조차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의 비율을 이 사건 합병비율보다 높게 산정²⁶⁾하였고, 리서치팀은 적정한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²⁷⁾'로 계산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리서치팀의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 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였다.²⁸⁾

26) H 회계법인은 1(제일모직) : 0.40(삼성물산), I 회계법인은 1(제일모직) : 0.37(삼성물산)을 각각 적정 합병비율로 산정하였음

27)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28) 또한, 이 사건 합병은 2013. 12.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대주주(이재용 등은 소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발행'을 통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되었다)이던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폐선사업부 인수, 2014. 7. 제일모직과 삼성 SDI 합병 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으로의 사명 변경, 2014. 12. 제일모직의 상장, 2015. 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물산으로의 사명 변경, 이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등 대

또한, 2015. 6. 24. 이 사건 합병과 구조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 반대 결정을 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위 SK 합병 안건에 대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합병 반대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주무부서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에서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말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고용복지수석비서관 A○○, 보건복지비서관 B○○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비서관 B○○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안건의 의사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재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C○○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C○○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하여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C○○ 등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국민연금공단

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삼성그룹 측에서 합병의 성사를 결실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이를 무산시킬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필요했던 삼성그룹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보다 더 유리한 타협적인 조건으로 다시 합병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았음

기금운용본부장 D○O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2015. 7. 6.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C○O 등에게 “그래도 이 사건 합병 안건은 SK 합병 안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C○O 등은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C○O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되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 대응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더라도 반드시 합병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이 사건 합병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O 등은 ‘전문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결권행사 전담 TF팀’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구성하고 위원별로 성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²⁹⁾하였으나, 피고인은 개별 위원들의 찬반 입장 분석 결과만으로는 100%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³⁰⁾ 합병 찬성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게 하기로 계획하고, 2015. 7. 8. C○O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찬성 의결을 하게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29)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문위원회 위원 J○O은 삼성경제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어 회피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같은 위원인 K○O 변호사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J○O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찬성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까지 하였음

30) 당초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찬성’ 5명은 J○O(기재부), K○O(경총), L○O(전경련), M○O(바른사회시민연대), N○O(공인회계사회), 반대 3명은 O○O(민주노총), P○O(한국노총), E○O(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권 1명은 G○O(국민연금공단)(괄호 안은 각 위원 추천기관)으로 파악하고, 위원들별로 대화가 가능한 창구를 동원하여 설득할 경우 찬성 가능성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당초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K○O이 합병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자 전문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른 것임

이에 COO 등은 같은 날 오후 급히 DOO 등을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에서 DOO 등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찬성 결정을 하라, 장관님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지시³¹⁾³²⁾하여, 결국 COO은 2015. 7. 9. DOO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로 하여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BOO 등을 통해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AOO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게 수시로 이 사건 합병 관련 동향을 보고하게 하였다.

그 후 DOO의 지시를 받은 리서치팀 직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명백한 합병 찬성을 위한 대내외적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면서 수치를 조작³³⁾³⁴⁾하였다.

3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사무관 QOO는 2015. 7. 8. 14:55경 이메일 제목을 ‘장관님 보고자료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여 위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하겠다는 내용 포함)’라는 보고서를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R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음

32) 2015. 7. 8.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우려한 DOO이 COO에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합병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까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병 찬성 의결을하도록 지시하였음

33)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합병에 찬성할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 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1:0.46 합병비율 수치조차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었음

34) 리서치팀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으로 인한 손실 상쇄분 등까지 감안하더라도 어떤 계산을 통해서도 최소한 이 수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합병 찬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2조 원 이상(리서치팀은 2조 원 이상 시너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위 손실액 1,388억과 유사한 이익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음. 이에 리서치팀 직원들은 2015. 7. 8.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단 하루만에, 2016~2017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전망하여 증가 폭을 기계적으로 5% 단위로 매년 5%, 10%, 15%, 20%, 25%로 적용하여 계산해 보았는데,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했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 가치가 약 2.1조원, 즉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계산되자,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하여 ‘두 회사가 합병되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리서치팀장 SOO가 DOO의 지시를 받고 리서치팀 직원 TOO에게 이와 같이 합병시너지 효과를 신출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SOO는 그 자료를 근거로 2015. 7. 10.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비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합병 시너지효과 2.1조원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합병 찬성을 적극 유도하였고, 합병에 찬성한 투자위원회 위원들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합병에 반대하였을 것임에도 위 자료 및 SOO의 발언을 사실로 믿고 찬성투표를 하였음

이어 D○O은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E○O으로부터 위 SK 합병 안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합병 안건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5:00 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수치를 토대로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결을 하게 하였고³⁵⁾, 그 의결에 따라 결국 2015. 7. 17.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었다.

한편, 전문위원회 위원장 E○O이 2015. 7. 10.경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은 SK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문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³⁶⁾들이 전문위원회 개최에 협조해주지 않아 E○O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2015. 7. 14.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5. 7. 12.경 국민연금재정과장 F○O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여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전문위원회 위원 G○O에게 직접 전화하여 "한 사람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커미티(Committee)가 판단을 한 것이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으며, 7. 13.경 F○O 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F○O에게 "언론에 시끄럽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세요."라고 지시하고, C○O 등은 F○O에게 "F○O 과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35)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모두 D○O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실장, 센터장, 팀장들로 구성되고, 위 12명 중 당연직 위원 9명 외에 D○O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는 3명 중 본건 주무부서 팀장인 투자전략팀장 외 2명을 기준 관례와 달리 전문위원회 부의 입장이 분명했던 운용전략실 외 다른 부서 팀장들로 지명(결국 그 2명 모두 찬성 의결에 동조)하였으며, D○O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요구하고, 회의 정회 중에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찬성투표를 유도하였음

36)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등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간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임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FOO로 하여금 전문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기존 투자위원회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지 못하게 유도하고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참고자료 문구에 투자위원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총회일인 2015. 7. 17.에야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COO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DOO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 DOO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DOO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앞에서, 이종구 위원의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 사건 합병 문제)를 복지부장관하고도 협의도 안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또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라는 물음에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 시절에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물음에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

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사후에 다 알고 아무 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II. 첨부

1. 긴급체포서 1부.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부.
3.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4. 변호인선임서 2부.

③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
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2017. 2. 28.

특검 2016형제2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9019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검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홍완선

직업 한양대학교 특훈교수(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약 2,100만 명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받아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³⁷⁾, 그 돈은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지급할 연금급여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의 원칙 등 4대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위와 같은 4대 원칙 외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³⁸⁾

37)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로 납부 받아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2016. 11. 기준으로 550조 원 이상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임

38)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 조직으로서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던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복지부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치권력이 개별적인 기금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등 수급권자를 위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되는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직원보다 기금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은 1996년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이건희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³⁹⁾을 받아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이라고 함)」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

39)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학수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2009. 12. 29.에 이학수 부회장은 2010. 8. 15.에 각각 특별사면 되었음

으로 추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이재용은 2014년 말경 삼성SDS와 제일모직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까지 거쳤음에도 위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위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위 합병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4. 11. 19. 위 합병은 무산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 후 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2015. 5. 26.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는 두 회사를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하고, 합병비율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는 내용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용을 포함한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의 주식 42.1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이 높아지게 됨과 동시에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2015. 1. 2.부터 2015. 5. 22.까지 삼성물산 외 다른 주요 건설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형

성되었는바, 삼성물산이 2015. 5. 13.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공사대금 약 2조 원 규모)를 수주하고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순경 사이에 삼성물산이 주관하던 공사 중 일부의 주관 업체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변경시키는 등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포함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다.⁴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Elliot Associates, L.P.)이 이 사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이 부적정하여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은 합병계약 체결 시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

40)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도 위와 같은 이유로 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 내 회사이이고, ②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현황에 차등이 있어 합병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③ 삼성물산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종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락하여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 의심되고, ④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발표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다가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였고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 및 직전에 있었던 SK 합병 건에 대한 반대 의결 절차와는 달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합병계약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므로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병계약 직전 주식 거래일인 2015. 5. 22.이 아니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 12. 17.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산의 재무제표 상 총자산가치, 향후 성장성, 보유 지분 가치 등을 평가하였을 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제일모직 상장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주가 상대 비율이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므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위 합병 발표 이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그 의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2015. 7. 3.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이므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이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으며,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위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이 자문을 의뢰한 M 회계법인, 삼성물산이 자문을 의뢰한 N 회계법인 조차 제일모직의 합병 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의 비율을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보다 높게 산정⁴¹⁾하였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⁴²⁾'으로 계산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의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

41) M 회계법인은 1(제일모직) : 0.40(삼성물산), N 회계법인은 1(제일모직) : 0.37(삼성물산)을 각각 적정 합병비율로 산정하였음

42)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0.46 합병비율 역시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움

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였다.⁴³⁾

무엇보다, 이 사건 합병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은 2015. 6. 17. 투자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결국 2015. 6. 24. '전문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합병 역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경우 마찬가지로 합병 반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위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주무부서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에서는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은 선례에 따라 위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4.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A○○ 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찬성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과 함께 전문위원회 C○○ 위원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합병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합병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경우 찬성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2015. 7. 7. 이재용을 직접 만나 합병비율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삼성물산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3) 또한, 이 사건 합병은 2013. 12.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대주주(이재용 등은 소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발행'을 통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되었음)이던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폐션사업부 인수, 2014. 7. 제일모직과 삼성 SDI 합병 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으로의 사명 변경, 2014. 12. 제일모직의 상장, 2015. 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물산으로의 사명 변경, 이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삼성그룹 측에서 합병의 성사를 절실히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이를 무산시킬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필요했던 삼성그룹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보다 더 유리한 타협적인 조건으로 다시 합병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았음

한편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에 있는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 D○○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2015. 7. 8.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에서 문형표 장관의 지시를 받은 D○○ 국장으로부터 재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찬성 결정을 하라, 장관님 의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인 투자 결정 및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에 개입 하려고 할 경우 이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국내 외 자문기관들로부터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으며,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 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활용하여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의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D○○ 국장

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고 소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이 대부분 부서 의견대로 의결되는 내부 투자위원회⁴⁴⁾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비율대로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EOO로부터 리서치팀에서 적정 합병비율로 결정한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지분이 0.44% 감소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약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게 되자, 합병 찬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EOO에게 이 사건 합병 성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되는 손실 약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OO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너지 효과가 약 2조 원이므로 리서치팀 직원 FOO에게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2조 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FOO은 단 하루만에,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2016~2017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전망하여 그 증가 폭을

44) 2014~2016년 기간 동안 개최된 투자위원회의 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SK 합병 안건을 포함한 총 6,731건의 안건 중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2015. 7. 10.자 투자위원회에 부의된 6건의 안건 외에는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에 소관부서의 주문(원안)이 제시되지 아니한 안건이 한 건도 없었고, 소관부서의 주문(원안)이 제시된 6,725건의 안건 중 원안과 달리 의결된 안건은 7건(0.2%)이며, 나머지 6,718건(99.8%)은 소관부서의 주문대로 '원안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기계적으로 5% 단위로 매년 5%, 10%, 15%, 20%, 25%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했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 가치가 약 2.1조 원으로 계산되어,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자,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하여 '두 회사가 합병되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F○○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분석 자료 내용을 보고받고 E○○에게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위 분석 자료를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2015. 7. 9. D○○ 국장에게 문형표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인 피고인 외 실장 7명, 센터장 1명,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팀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팀장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통상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장, 투자기획팀장, 책임투자팀장이 참석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투자위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합병 찬성 결론을 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2015. 7. 10.자 투자위원회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리스크관리팀장 G○○, 패시브팀장 H○○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였고,⁴⁵⁾ 투자위원회 개최 전인 7. 초순경 투자위원회 위원인 I○○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7. 8.경 투자위원

45) 리스크관리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risk)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마다 운용부서에 경고하는 업무를, 패시브팀장은 주식시장의 인덱스(주가지수 연동) 투자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는 보직으로서 2014~2016년 기간 동안 매년 56회 개최된 투자위원회 중 리스크관리팀장이 참석한 것은 5회(2014년 1회, 2015년 4회, 2016년 0회)에 불과하고, 패시브팀장이 참석한 것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이 부의된 투자위원회가 유일함(인물별로 보더라도, 위 3년의 기간 중 G○○은 1회, H○○은 5회 참석하였음)

회 위원인 JOO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 감시인에게 알아볼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사실상 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 운용본부 내부직원들인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COO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도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7. 10. 15:00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찬성 결론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위원회에 배석자로 참석한 E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시너지 효과가 포함된 분석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근거로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은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2.1조 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찬성투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⁴⁶⁾, 투자위원회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인 GOO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완용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KOO에게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면 헷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완용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LOO와 IOO에게 “합병 찬성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내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46) EOO는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1:0.35)과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합병 비율(1:0.46)의 차이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약 1,5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EOO의 위 발언 내용이 투자위원회 회의록에서 삭제되었음

말하는 등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한 합병 찬성 지시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였다.⁴⁷⁾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한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⁴⁸⁾⁴⁹⁾

III. 첨부

1. 변호인선임서 1부.

47) 주식회사의 합병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22조 제3항, 제434조),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는 주주 중 83.57%가 참석하여 69.53%가 합병에 찬성하였음

48) 2017. 1. 31. 삼성물산 주가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손과 평가손을 합산한 총 손실액은 8,638억 원임

4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5호 관련임